

대학원 응용통계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응용통계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응용통계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응용통계학과 소속 교수들은 응용통계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대학원 교육의 혁신을 위해 학과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간다.

제5조 (과목개설)

- 가. 강의는 교과목별로 수강희망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나. 필요한 경우 야간 또는 토요일에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제6조 (교·강사 배정)

수업의 담당 교·강사는 내부 전임교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는 외부의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일임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및 변경)

- 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지도교수를 신청하고 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구 지도교수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석사과정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1편을 게재하였거나 게재확정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에게는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하며, 국내 또는 국외 학술대회에서 주저자로 논문 1편을 발표한 학생에게는 1개의 교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 가. 종합학력시험은 해당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교수가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출제 교수를 선정한다.
- 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자격시험 과목과 외국어 자격시험 면제기준에 준한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위취득과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대학원 학사제도에 준한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비발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발표를 반드시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예비발표를 시행할 수도 있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대학원 학사제도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연구논문을 선택할 경우 지도교수와 1인의 학과 전공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위논문에 준하는 심사절차 및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연구논문의 인쇄본과 파일을 학과에 제출하며,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한다.

제18조 (논문제출 자격)

박사과정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1편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제8장 학과운영위원회

제19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